

## 중국의 건축사제도와 외국건축사에 대한 자격인정(증) 방법 Chinese Registration System and Mutual Recognition

이관영 / 한인종합건축, 본협회 국제위원  
by Lee Kwan-Young

지난호(98년 4월호)에 소개하였던 「일본건축사제도」에 이어 「중국건축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건축사제도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개방정책이후 미국 AIA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그 역사는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설계기술자(設計大師; 일종의 디자인 마스터)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나,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 자격·기준·품질에 대한 상호 인증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도를 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후 WTO협정에 따라 세계각국 사이에 상호인증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이를 위한 표준화 방안이 AIA가 주도하고 있는 UIA에 의하여 논의되기에 이르렀는데 중국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중에 유일하게 세계수준의 건축사제도를 완비한 나라가 되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와 일본은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증(인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열렸던 한·중·일 3국건축사 협의회(98. 4. 16~19/제주도 서귀포)에서도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호인증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뿐 아니라, 넓게는 교육제도의 개편, 법규의 개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로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일찍부터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일본에서조차, 아직까지 건축관련단체간의 의견수렴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격제도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는 내년 UIA 실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이에 대한 초안은 미국과 중국에 의하여 준비중에 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하는 내용이 중국건축사제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UIA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외국건축사상호인증안의 추이를 예측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주>

### 중국건축사등록제도

#### 1. 제도의 확립

80년대부터 개혁과 개방정책이 시행된 이래 중국의 경제, 문화, 공공분야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뿐만아니라 교통수단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건설수요를 증가시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그간의 국제관계에서 축적된 경험과 자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우선 건축사(建築師)에 대한, 뒤를 이어 구조기술자(結構工程師)에 대한 교육과정평가, 전문교육, 시험및자격제도에 관한 제도가 건설부와 인사부에 의하여 마련되어 국무원의 승인을 득하였다. 이 제도는 실무분야에 있어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자의 능력과 소질을 배양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건강한 복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 함은 물론, 건축사와 구조기술자의 상호인증을 통한 국제간의 협력을 도모하는데까지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국무원을 비롯한 유관부처의 승인을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와 학위인증위원회(國務院學位辦公室)의 지

지아래, 5년제 대학건축과정의 공학사학위(Bachelor of Engineering)를 건축학위(Bachelor of Architect)로 바꾸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체계화 하기위하여 1990년에 건축교육과정평가기관(NBAA: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全國建築學認定評 委員會)를 설립하고, 미국과 영국의 관련기관 대표를 초빙하여 평가작업에 참여토록 하였다. 현재 72개 건축학교중 12개 학교가 평가에 합격하였으며, 이 제도는 새로운 면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학력을 보장하고 있다.

건축사등록에 관한 《중국등록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注冊建築師條例)》은 1995년에 국무원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전국건축사등록위원회(NABAR ; National Administration Board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가 건설부와 인사부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1994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1995년에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되고, 두 번째는 1997년에 시행되었다. 이제는 매년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등록제도는 1997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과 운영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의 전문가의 조언과 참여가 있었으며,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사제도의 경험을 살려, 유사한 분야인 구조기술분야에도 등록제도를 마련하였다. 역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원아래, 4년제대학의 토목교육과정에 대하여 특별평가기구를 통한 평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총 230개 교육기관중 18개가 평가를 통과하였다. 여기에는 영국, 미국, 홍콩 등의 관련기관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전국구조기술사등록위원회(NABER(S); National Administration Board of Engineering Registration(Structural)/全國注冊工程師管理委員會(結))가 건설부와 인사부에 의하여 조직되고, 1996년의 시범운영을 거쳐, 1997년 12월에 최초의 국가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과 평가작업에는 NCEES(미국구조및측량사고시위원회)와 IStructE(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구조학회)등이 참여하여 시험과정을 참관하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2. 시험제도

중국의 시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진제국의 기준과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국제적인 상호인증의 필요에 맞추어 미국과 영연방의 유용한 장점들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는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1. 1급건축사

국무원의 《條例》에 따라, 1급건축사에 응시하

려면 교육평가에 합격한 5년제 대학에서 건축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3년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자격을 갖는다. 시험은 9개과목으로, 기본설계(設計前期工作), 단지설계(場地設計), 건축구조(建築結構), 건축설비(環境空制與建築設備), 건축재료 및 일반구조(建築材料與構造), 건축경제, 시공 및 설계업무관리, 건축설계 및 표현(建築設計與表現), 단지설계작도(場地設計作圖)로, 앞의 7과목은 이론이고 뒤의 2과목은 설계작도시험으로서 모두 32시간에 걸쳐 시험을 치르게 되어있다. (참고: 한국은 약9시간, 일본은 12시간, 미국은 33.5시간이다) 9개 과목중 부분적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5년간 유효하다.

### 2-2. 1급구조사(1級結構工程師)시험

이 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건설부와 인사부규정에 의하여, 1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증받은 4년제대학에서 공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예비시험응시자격을 갖는다. 인증받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쳐야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비시험은, 오전에는 기초이론 9과목 120문제, 오후에는 전문이론과지식에 관하여 8개과목 60문제가 주어진다. 시험시간은 모두 8시간이다.

예비시험 통과후 4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쳐야 비로서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전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鐵筋混凝土結構), 강구조, 조적구조(砌(體)體結構)교량구조(橋梁結構), 기초와 고층구조(地基基礎和高層結構)의 6과목중 4개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오후에도 오전과 같이 6개과목중 4개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이외에 건축경제와 업무관리, 기본적 설계개념(綜合概念: Conceptual Design)의 2가지 필수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1개과목당 8문제씩 모두 48문제가 출제되고, 총 시험시간은 8시간이다. 동시에 전과목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후 1급구조사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등록을 할 수 있다.

선진국들에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교육기관만이 교육평가기준을 통과하였고, 각 기관마다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조사시험은 영연방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념적인 질문에 비중을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건축사시험도 미국을 표준으로 하면서 영연방의 방식도 받아들이고 있다. 시험성적을 일정기간 유효하게 인정하는 방법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다.

## 3. 시험면제혜택

등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경험있는 기술인력의 선발에 정확을 기하지 않으면 않된다. 경험있는 전문기술인력이라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

다. 중국에 있어, 자격등록제도관련법규의 제정이 최근여야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고급 직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전문직이 존재하였다. 그들의 교육 배경이나 실무경력 등이 새로운 제도에 의한 조건에도 합당하거나 유사할 경우, 그들 전문가(專家), 교수, 중·고급전문기술인원에 있어서는 경력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써 대략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가. 1970년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설계대사(設計大師)의 칭호 또는 이름높은 전문가(知名度較高的專家), 교수,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규모, 난이도를 지닌 건물의 공사책임을 맡은 경력이 있는 설계자 등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특별히 1급 건축사 또는 1급구조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 가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자는, 1급건축사는 재교육 또는 면접을, 구조사는 평가시험(필기)을 통과한후 전국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1급건축사 또는 1급구조사의 자격을 갖는다.

다. 1971년부터 1985년 이전 사이에 건축과를 졸업하였거나, 1971년부터 1989년 이전 사이에 구조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즉 건축사는 9과목을 4과목으로, 구조사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이 방법은 효과로 진행되고 있다. 오랜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시기에 배출된 전문인력을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재배치하고, 신·구기술인력을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써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 4. 등록제도

시험 또는 특별심사를 통과한 건축사와 구조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도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유효의 등록증과 업무에 사용할 인장(印章)을 교부받는다. 2년마다 경력, 직업윤리, 계속교육이수 등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등록증서로 갱신한다. 현재 이미 6,762명의 1급건축사가 배출되었고, 금년(98년)엔 8,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구조사는 금년말부터 등록이 시작될 것이다. 《조례》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모든 건축과 구조관련도서는 등록건축사 또는 구조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 5. 관리기구

국무원 조례《中華人民共和國注冊建築師條例》와 관련법규에 따라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서 1,2급을 관리한다. 전국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와 전국등록구조사관리위원회(全國注冊工程師管理委員會(結))는 지방위원회와 국무원의 유관부문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아래에 각각 사무국(秘書處), 시험전문기

구 및 감독위원회(考試專家組和監督委員會)가 있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상설기구로서, 주요업무로는 시험, 등록, 조직관리, 교육표준의 제정과 실시, 시험기준과 등록조건, 국제교류업무 외에도 일상적 행정사무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시험전문기구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는 전국등록건축사협회와 전국등록구조사협회가 설립되면, 이들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감독위원회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하는 위반사항과 비도덕적행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전국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 처리토록 한다. 지방위원회는 관할행정구역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업무를 강화하기위하여, 건설부는 국가 편제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50인으로 편성된 건설부실무자격 등록센터(建設部執業資格登錄中心)를 정식으로 설치하여, 전국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NABAR)와 전국등록구조사관리위원회(NABER(S))의 사무국과 함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 시험처, 등록처, 교육처, 국제연락처와 사무처 등 5개부서가 정상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관리방식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 6. 국제협력관계

중국은 그들의 새로운 건축사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선진각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효율적일 뿐 아니라 상호인증이 용이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의 관련기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특히 미국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NCARB), 구조·측량사시험관리위원회(NCEES)와 런던의 세계구조학회(IStructE),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그리고 우리 건축사협회(KIRA)와 두터운 협력관계를 갖었다

그 결과 이미 영국의 IStructE와는 시험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에 합의하였고, 미국의 NCARB와 NCEES와는 각각 3년간의 상호업무협조에 동의하여,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새로운 상호인증표준안을 마련중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세계건축가(사)연합회(UIA)의 사무국으로, 건축사실무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기초하여, 1999년 북경에서 열리는 UIA총회에 제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7. 자격상호인증(인정; Mutual Recognition)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다국적기업의 발달, WTO협정에 의한 세계시장의 개방화는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공사는 물론 설계분야의 국제화라는 변화를 맞게되었다. 이에 대비한 등록건축사자격의 상호인증(인정: Mutual Recognition)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실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사제도와 기술관련제도의 확립에 있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선진국과의 상호인증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표준과 다른 국가나 지역의 건축사에 대해서도, 평등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상호승인원칙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대강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중국과 유사한 교육평가기구와 시험기준을 갖은 나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호인증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보충시험이나 해당국가의 법규, 건축기준에 대한 면접이 요구될 수도 있다.

나. 교육과정평가기구와 시험기준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오랜기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에 의한 건축사 혹은 구조사」를 서로 인정하도록 하되 그 조건으로써,

- ① 인증받은 대학에서의 학위취득 여부
- ② 자국에서의 자격취득 여부
- ③ 대학졸업후 7년정도의 실무경력
- ④ 위의 7년 경험중 2년간 본국의 규정에 따른 중요공정을 책임진 경력

⑤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  
⑥ 위의 사항외 상대국의 법규, 직업에 관한 도덕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다. 단기간내에 교육과정평가기준이나 시험기준에 대한 상호인증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중국의 등록유관부처의 승인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의 동의를 얻어, 제한된 업무내에서 등록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국의 1급건축사 혹은 1급구조사와의 합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측 건축사나 구조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외에 상세한 상호인증방안은 중국측에 의하여 마련된 외국건축사(가)와의 상호승인에 관한 원칙(초안)을 부록으로 삽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맺는 말

우리는 이제까지 건축사자격상호인증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우

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유관단체(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라기보다는, 사안자체가 선불리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격변하고 있는 건설산업환경속에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만도 없게 되었다. 이는 건설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듯, 우리설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그 보다도 값싸고 질 좋은 기술을 앞세운 외국건축사들의 우리 국내시장 침투를 경계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루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우리 설계기술의 해외진출을 부르짖는 장본인은 우리건축사가 아닌 일부 건설업체나 건설관련부처인데, 그들은 과연 자격상호인증문제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인식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들의 거대한 사욕이나,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 거리낌없이 외국건축사(사)를 불러들이는 현실 또한 경쟁력강화나 상호인증문제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다행히 지난번의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중일3국건축사협의회에 건설교통부의 고위당국자가 참석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하겠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본다.

또하나, 우리나라에서 상호인증문제를 다루는 데에 사소한 문제가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Architect를 칭하는 건축가와 건축사의 호칭 문제이다. 건축가란 영어의 Architect를 번역한 말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된 전문인으로 「칭호의 독점」이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이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건축사(建築士)」라 불리우고 게다가 중국에서는 아예 「建築師」라고 까지 불리우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여, 건축사협회에 앞서 발족한 건축가협회는 오히려 건축가(Architect)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복잡성이 가끔 조그만 혼란을 가져온다. 즉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축사에 해당하는 건축가협회(AIA)나 세계건축가협회(UIA)가 위에서 말한 상호인증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건축가협회(KIA)는 조직의 특성상 꼭 등록건축사만으로 구성되어있지는 않으므로(일본에도 건축가협회(JIA)가 있는데 여기는 전원 등록건축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격등록에 대한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 대화상대로서, 외국 관련단체들이 가끔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건축가협회 회원 대부분이 건축사협회 회원이기도 한 터여서, 큰 문제는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3단체의 협조관계가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NABAR) 關於與外境建築師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的辦法(討論稿)**  
**중화인민공화국전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외국건축가(사)와의 자격기준에 대한 상호승인원칙(안)**

1. 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以下簡 委員會)愿意在平等互利的原則下與境外注冊建築師管理機構確立相互承認建築師的專業技術資格(以下簡 相互承認).  
 중국건축사등록위원회(NABAR)는 외국의 건축사등록관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주의원칙과 동등성에 기초하여, 자격기준의 상호승인원칙을 다음과 같이 확립시키고자 한다.
2. 相互承認可以採取以下方式之一; 상호승인 방법은 아래 열거한 방식에 의한다.  
 2-1 在通過雙或多邊對比性研究確認各方具有與對方相當的專業技術資格的條件下 相互承認對方按其標準批准專業技術資格,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기준을 비교검토한 결과 관계국간의 자격기준이 상호 적합(Compatible)하다고 인정되면, 상대국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  
 2-2 通過雙或多邊對比性研究確認各方具有基本相當的專業技術資格, 採取共同接受的對等原則或補充考試或面試的方式取得相互承認,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기준을 비교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상대국간의 합의에 따라 동등성에 기초한 원칙에 따라 보충시험 또는 면접 등을 통하여 상호승인을 득하는 방법.
3. 委員會在與境外建築師注冊資格管理機構進行對比性研究時, 可以國際建築師協會所 通過的《建築師職業實踐標準》為基礎, 并採取 或多邊同意的對等性條件(附件一)為確認原則.  
 위원회는 외국의 자격관리제도를 비교함에 있어, 국제건축가협회(UIA)가 채택한 국제건축실무권장기준(Recommended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 Standards)을 기초로 하고, 아울러 서로 대등한 조건(부건-1; Appendix-1)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상호승인의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4. 經雙或多邊研究同意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的管轄範圍內的注冊建築師均應按照雙或多邊協議, 由所在地區的建築師資格管理機構出具證明, 提交對方相應的管理機構受理.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상호승인에 동의하였을 경우, 관할구역내의 건축사등록기구로부터 교부받은 자격증명은 상대국 등록기구에 제출, 심사를 받아 인정한다.
5. 未與本委員會取得相互承認專業資格的國家或地區內的注冊建築師或建築學專業人員, 要求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取得注冊建築師專業技術資格的確認者, 可以單獨向本委員會總部提出申請并提交有關證明材料, 經委員會審查同意後, 在指定地點參加全部或 部分考試, 或進行面試.  
 본 위원회와 상호승인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의 건축사 또는 건축전문가로서 중국의 등록자격을 원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6. 中華人民共和國境內的外資或合資工程, 當外資方面要求自行指定其建築設計師, 而 該設計師又未取得在中華人民共和國確立的專業技術資格者應經過本委員會或其 授權的地方委員會審查其資格證件, 合格者給予單項注冊權利, 但必須與中國的 1級注冊建築師進行合作設計.  
 중국내에서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또는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에 있어, 투자자가 자신의 건축가를 선임하고자 하고 그 건축가가 본위원회의 상호승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본위원회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사업에 한하여 등록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중국의 1급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7.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取得注冊建築師專業技術資格的境外建築師, 均應參加中國注冊建築師協會為境外會員, 并遵守《注冊建築師職業行為準則》  
 중국에서 등록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건축사는 중국등록건축사협회(NARAC; National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PRCChina)의 해외회원으로서 가입하고 협회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境外建築師, 取得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專業技術資格者, 其有效期限為2年, 期滿 后 需申請延期, 并提供以下文件:-  
 중국의 등록건축사자격 취득한 외국건축사의 등록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아래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되:  
 8-1 近二年內在本國或中國擔任過的建築設計或相關職業活動  
 최근 2년간 본국 혹은 중국에서의 설계실적 또는 건축관련 활동내용  
 8-2 近二年內在本國或中國接受繼續教育的內容和時間  
 최근 2년간 이수한 계속 교육의 내용과 시간  
 8-3 由中國注冊建築師出具的近二年遵守職業行為準則的證明  
 중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간의 행동강령준수증명  
 經本委員會審查同意, 可以延期.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9. 本辦法只活用于中華人民共和國一級注冊建築師專業技術資格, 不包括二級注冊建築師.  
 이 원칙은 중국에서의 1급건축사에만 적용되며, 2급건축사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附件一 注冊建築師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中的對等性原則**  
 자격상호인증을 위한 대등한 조건

1. 本委員會與建立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的管理機構共同確認以國際建築師協會通過的《建築師國際職業實踐標準》為基礎, 確立以下的對等性原則.  
 본 위원회는 세계건축가협회(UIA)가 채택한 《건축실무권장기준》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동등성의 원칙을 상호승인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2. 教育資格(Qualification on Education/Accreditation)  
 교육자격과 교육평가기구  
 2-1 相互承認注冊建築師, 應當具有在經過授權的全國性獨立教育評 機構評 合格的五年全日制大學建築學系(校、院)取得建築學學士以上的職業學位.  
 상호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축사는 독립된 권한을 갖은 교육평가기구의 평가 기준에 합격한 5년 전일제대학의 건축과에서 건축학 학사이상의 전문학위를 득하여야 한다.  
 2-2 在經過本國政府批准建立, 并經過授權的獨立教育評價機構評價合格的四年全日制大學建築系或建築工程系卒業, 取得理學士或工學士等非職業學位者, 在滿 足核心課程的前提下, 可以在增加二年職業實踐的條件下, 被認為具有與(2-1)對等性的資格.  
 독립된 권한을 갖은 교육평가기구에 의한 평가기준에 합격한 4년 전일제대학의 건축과, 혹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학사 또는 공학사와 같은 비전문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필수과목을 만족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아래, 2년간의 실무경험을 추가함으로써, 2-1에 언급한 5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은 것으로 본다.
3. 職業實踐培訓(Practice / Internship Experience)  
 실무경험 및 인턴과정  
 3-1 在中華人民共和國申請參加注冊考試的專業技術人員, 在取得規定的職業學位取得以後, 必須取得不少於三年(700有效小時)的系統職業實踐經驗的培訓(詳見有關規定), 才能參加職業考試.  
 중국에서 등록건축사시험에 참가하려면 규정에 따라 전문학위를 취득한 후, 최소한 3년(700유효시간)의 실무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3-2 鑒于國際建築師協會的標準承認職業實踐培訓(五年制大學卒業者)的時間可 是二年, 本委員會擬在實踐經驗滿足以下核心要求:  
 세계건축가협회가 최소한의 실무훈련기간으로, 5년제 대학 졸업후 2년간의 인턴과정을 갖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본위원회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수험자격을 인정한다.  
 - 不少於350有效小時的設計實踐經驗(包括設計前期工作, 方案或初步設計, 施工圖設計等)  
 최소 350유효시간의 건축실제관련 실무경험(Presentation Study, Concept Design, Design Development, Working Drawing)  
 - 不少於70有效小時的施工配合經驗(包括工程招投標, 合同管理, 施工現場監督等)  
 최소 70유효시간의 건축시공관련경험(입찰, 계약관리, 현장감독 등).  
 - 不少於30有效小時的管理經驗(包括項目管理和設計管理等).  
 최소 30유효시간 이상의 관리업무경험(Project Management, Design Management)  
 3-3 職業實踐的地點是否必須在對方境內以及在對方境內實踐的最少時間, 通過雙邊協商確定. 凡實行此項要求時, 雙方應為對方在本國(區)的實踐創造相應條件  
 해당국에서의 실무경력과 최소시간을 의무화할 것인가의 여부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쌍방은 실무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考試(시험)  
 4-1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取得注冊建築師資格者, 需參加為時32小時, 9個科目的 職業資格考試(詳見有關部門文件)  
 중국등록건축사시험에 참가하는 자는 32시간에 걸쳐, 9개 과목의 전문학과 시험을 치뤄야 한다. (상세한 것은 관련법규 참조)  
 4-2 本委員會可以以國際建築師協會的標準為基礎, 通過對比性研究, 研究確定在 考試方面的對等性原則  
 본위원회는 세계건축가협회의 건축실무 권장기준을 기초로 하여, 연구검토를 거쳐 시험에 관한 대등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4-3 不論採取何種方式(全部考試, 部分考試或面試)考生均應證明自己對對方(地 區)設計法律和規範的掌握了解.  
 어떠한 형식의 시험(전부, 부분 혹은 면접고사)을 막론하고, 모든 수험자는 상대국의 설계법규와 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對於未能全部滿足以上要求, 但有超過 20年建築設計經驗, 并有設計業績者, 可參 照 國際建築師協會擬定的對“有豐富經驗的建築師”的有關辦法, 由協議雙方具體確 定對等性原則.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더라도, 20년 이상의 설계경험을 갖추고 완 성된 자신의 작품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가는 UIA의 건축실무위원회(PCP)가 제안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건축가(Broadly Experienced Architect)”에 대한 원칙을 참조하여 당사국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상호인증이 가능하다.